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. 8. 19 선고 2020가단4153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오재훈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11. L

변 론 종 결 2021. 7. 8.

판 결 선 고 2021. 8. 19.

주 문

1. 피고 B, D, E, F, G, H, I, J, K는 피고 C에게 별지 (1) 기재 건물 중 각 별지 (2) 목록 기재

-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5. 2. 5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피고 C은 피고 L에게 별지 (1)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7. 1. 20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3. 피고 L은 원고에게 별지 (1)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20. 7. 5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- 가. 경남 남해군 M 대 235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 및 위 지상의 별지 (1) 기재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은 망 N의 소유였다.
- 나.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고, 건축물대장상 망 N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.다. 망 N는 1995. 2. 5.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아들인 피고 C에게 증여하였고, 피고 C은 2007. 4. 13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라. 피고 C은 2017. 1. 20.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 L에게 매도하였고, 피고 L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마. 피고 L은 2020. 7. 5.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, 원고는 2020. 8. 24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바. 한편 망 N는 1996. 3. 25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는 처(3/15)인 피고 B과 자녀(2/15)들인 피고 C, G, J, K, 망 O, P이 있다. 망 O는 2011. 10. 12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는 처(3/7)인

피고 D와 자녀(2/7)들인 피고 E, F가 있다. 망 P은 2020. 10. 19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는 처(3/5)인 피고 H와 자녀(2/5)인 피고 I이 있다.

[인정 증거] 갑 제1 내지 6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❶ 피고 B, D, E, F, G, H, I, J, K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별지 (2)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5. 2. 5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, ❷ 피고 C은 피고 L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. 1. 20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, ❸ 피고 L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0. 7. 5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므로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성만